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재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12. 4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19호로 2017년 11월 13일 김재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함 (안 제2조)

- 3명 이상 5명 이하 → 3명

나.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(안 제5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회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·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, 안 제2조에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‘3명 이상 5명 이하’에서 ‘3명’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며, 자구에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15조(결산서의 구성)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.

1. 결산 개요
2. 세입·세출 결산
3. 재무제표(주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가. 재정상태표
 - 나. 재정운영표
 - 다. 순자산 변동표
4. 성과보고서

제16조(결산서의 작성 등)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·세출 결산은 세입·세출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,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,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·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